

수원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4나33786 판결 [연대보증금지급청구]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4나3378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가단3194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변론종결 2015. 11. 6.

판결 선고 2015. 12. 11.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가단3194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771,637원 및 그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중 43,771,637원에 대하여는 2014. 5. 27.부터 2014. 6. 13.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771,6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2. 10. C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대여 당시 피고가 C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5. 14. 피고를 상대로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 소송(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3가소3870호)을 제기하여, 2004. 6. 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7. 10.부터 2003. 8. 29.까지는 연 36%의, 2003.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선행판결은 2004. 6. 16.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초한 채무는 2014. 5. 26.을 기준으로 원금 15,000,000원과 연체이자 43,771,637원 합계 58,771,637원이 남아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 원리금 58,771,637원 및 그중 원금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4.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중 이자 43,771,637원에 대하여는 위 2014. 5.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4. 6.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② 원고가 C에게 대여한 돈은 1,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며, ③ 피고는 C에게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연대보증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2,000만 원의 범위에서만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고, ④ C이 2000. 3. 20.부터 2002. 8. 9.까지 위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할 것인데, 이는 전소의 소장부분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소에 응소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3가소3870호 사건의 소장 부분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원고 승소의 이 사건 선행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② 원고는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후소를 제기한 사실, ③ 피고는 2014. 7. 29. 이 사건 선행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후소의 소장부분 및 그에 증거서류로 첨부된 이 사건 선행판결문 사본 등을 송달받은 2014. 6. 13. 무렵에는 이 사건 선행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2014. 6. 13.로부터 2주가 도과한 2014. 7. 29. 제기된 위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추완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2015. 1. 30. 선고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4나29770),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5. 6. 24.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대법원 2015다14907) 같은 날 확정된 사실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존재가 확정되었고, 이 사건 선행판결에 대한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판력이 소멸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로서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후소에서 다룰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이 사건 선행판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서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최용호

판사 손성희

판사 권순현